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39

발의연월일: 2021. 4. 30.

발 의 자:추경호·김상훈·성일종

임이자 · 정진석 · 이양수

김선교 • 허은아 • 강대식

곽상도 · 김예지 · 류성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부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면제의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신설되고,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 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세율이 하향 조정됨.

당시 정부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일몰이 연장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 폭등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재산세 등 세부 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국내 대학의 재정난이 가중되어 학교의 재정 붕괴로 인한 교육 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의 재정 위기는

더욱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취득세 등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세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로,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 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 |
|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 | 대한 면제) ① | |
| 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 | | |
| 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 | | |
| 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 | | |
| 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 |
|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 |
| 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 | | |
|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 | | |
| 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 | |
|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 | | |
| 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 | | |
| 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 | | |
| 서는 취득세를 <u>2021년 12월 31</u> | <u>2026년 12월 31일</u> - | |
| <u>일</u> 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 | |
|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 2 | |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 | |
| 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 | |
| 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 |

| 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
|--|
| 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
|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 |
| 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 |
| 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 |
| 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 |
| 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 |
| 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
|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
|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 |
| 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
|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
|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 |
| 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 |
| 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
|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 |
| 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
| |
|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 |
|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 을 각각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
| |
| 을 각각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
| 을 각각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 |
| 을 각각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 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을 각각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 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

| <u>2026년 12월 31일</u>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u>2026년 12월 31일</u> |
| |
| |
| |
| |
| 4 |
| |

- 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 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 1일까지 면제한다.
- 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법인에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⑥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무상사용기간 동안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

| | - <u>2026년</u> | <u>12월</u> |
|------------------|----------------|---------------|
| <u>31일</u>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2026</u> |
| <u>년 12월 31일</u> | | |
| <u>⑥</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 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 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 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 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 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 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 <삭 제>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 <u>2026년 12월 31일</u> |
|-----------------------|
| |
| ⑦ |
| |
| |
| |
| |
| |
| |
|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
| |
| <u>ম</u> |
| 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
|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 |
| 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 |
| <u> </u> |
| <u><삭 제></u> |

-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